

우리는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먹는 숯 안전 실태 조사

2008. 3.



한 국 소 비 자 원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VISIT...

LANZAROTE
Caliente.COM

- 차례 -

I.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 및 목적	1
2. 조사대상	2
3. 조사내용 및 방법	2
4. 조사기간	2
II. 일반현황	3
1. 숯의 정의 및 용도	3
2. 숯의 독성	4
3. 과거 단속사례	5
III. 조사결과	6
1. 위해사례	6
2. 표시실태	7
3. 유통형태	8
4. 광고실태	9
IV. 문제점 및 대책	11
1. 자진회수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11
2.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지양	11
3.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12
V. 조치계획	12
별첨 1 조사대상 제품 표시실태	13
별첨 2 제품에 포함된 광고의 내용	15
별첨 3 자진시정조치의 절차	16

I.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 최근 본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먹는 숯」 제품을 섭취한 후 복통 및 설사가 발생하였다는 위해정보와 이물(쇠 조각)이 혼입되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됨.
 - 숯은 식품공전에 의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있어 식용으로는 적합치 못한 물질이며,
 -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 후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는 식품첨가물이며 약물 오·남용시 해독을 위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예는 있으나 그 용도가 제한적임.
 -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으로 숯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인터넷쇼핑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식용 숯가루”, “건강식품” 등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 ☐ 또한, 이러한 숯가루는 각종 체험 수기 등을 이용하여 치료가 어려운 말기 암이나 만성 간질환 등의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듯이 광고하는 경우가 다수로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호전되지 않아 심신이 지친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음.
 - ☐ 또한, 2007년 10월 이기우 의원은 착향 목적의 목초액이 전통적인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부정불량식품 형태의 유통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¹⁾한 바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유통되는 먹는 숯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함.
- ⇒ 이에 「먹는 숯」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실태와 위해사례를 조사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메디컬투데이 2007. 10. 22.

2. 조사대상

☐ 주요 오픈마켓(4개)에서 판매되는 먹는 숯 제품과 개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 총 10종

○ 주요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디앤샵, GSestore)* : 8종

○ 개인쇼핑몰 : 2종

* 2007년 오픈마켓 매출순위 5위 이내 업체 중 애플닷컴의 경우는 2008년 1월부터 영업을 중단하여 구매 불가함.

3.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	조사방법
○ 주요 오픈마켓 및 개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표시사항	실태조사
○ 관련 법규 검토	자료조사
○ 위해성 검토	전문가 자문

4. 조사기간

☐ 2008. 1.~2008. 3.(3개월)

II. 일반현황

1. 숯의 정의 및 용도

- 숯은 목재의 공기 공급을 차단하고 가열하거나, 또는 공기를 아주 적게 하여 가열하였을 때 생기는 고체 생성물로²⁾, 목탄(木炭)이라고도 함.
- 숯은 냄새를 제거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을 정제·여과하는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상태이나 현행 식품공전³⁾상 숯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성분으로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못함.
- 숯은 활성탄⁴⁾의 형태로 식품첨가물로 이용되며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시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식품중의 잔존량은 0.5%(규조토, 백도토, 벤토나이트, 산성 백토, 탈크 및 퍼라이트 등 다른 불용성광물성 물질과 병용할 때에는 전 잔존량의 합계가 0.5%)이하이어야 함⁵⁾.

※ 식품첨가물로서의 활성탄의 성분규격(식품첨가물공전)

- 성상 : 흑색의 분말 또는 알갱이로 냄새와 맛이 없다
- 순도시험
 - 염화물 :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
 - 황산염 :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
 - 비소 : 4ppm이하
 - 납 : 10ppm이하
 - 아연 : 0.1%이하

2) 두산세계대백과

3) 식품공전 제3.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2.원료등의구비요건1)식품원료(7)③식품의원료로사용할수없는원료

4) 톱밥, 목편, 야자나무껍질의 식물성 섬유질이나 아탄 또는 석유 등의 함탄소물질을 탄화시킨 다음 부활화하여 얻어진 것

5) 식품첨가물공전

- 숯은 대한약전에 **약용탄(Medicinal Carbon)**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며, 주로 약물 오·남용시 해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예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신중히 투여해야 함.

❧ 성분명(charcoal activated : 약용탄)⁶⁾

- 성분군 : 흡착제 소화기계 약물
- 관련된 성분명 : charcoal activated, adsorbent charcoal, charbon active, medicinal charcoal, carbo, activated charcoal, charcoal

❧ FDA 승인 적응증 : 해독

❧ FDA 미승인 적응증 : 설사, 소화불량

❧ 신중투여 : 장운동이 손상된 경우

❧ 부작용(빈도는 정의되지 않음) :

- 내분비대사계 : 하제와 같이 복용시 **고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고마그네슘혈증**이 일어날 수 있음
- 위장관계 : 구토(sorbitol과 복용시 빈도증가), 설사(sorbitol과 복용), 변비, 복부부종, 장폐색
- 기타 : 검은색으로 대변 변색
- 임부투여안전성 : 태아위험은 배제할 수 없음.
- 수유투여안전성 : 영아의 위험은 배제 못함.

2. 숯의 독성

□ 동물실험에서 밝혀진 독성⁷⁾

- 활성탄의 일일허용섭취량(ADI)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동물 대상의 독성시험결과는 아래와 같음.
- 만성독성(Long-term exposure) : 활성탄 10%를 함유한 사료를 실험용 쥐에게 12~18개월 주었으나, 소맥분 15%를 포함한 사료를 준 대조군과 독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없었음.
- 기타 : 콜로이드상 탄소 160mg/kg을 개에게 정맥주사할 때, 사

6) KIMs(대한민국의약품정보센터) ONLINE의 의약품종합검색의 성분명 “charcoal activated”

7) 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별 안전성정보

망물은 71%였고 중독증상은 저혈압, 진행성빈맥, 잦은호흡 및 혈진과 백혈구 감소가 보고되고 있음.

□ 인체 독성⁸⁾

- 식품독성학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숯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섭취를 하게 되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식품 내의 여러 영양소를 흡착하게 되어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음.
-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위험이 있어 당뇨, 간질, 신부전, 심부전 환자가 이를 남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음.
- 숯은 변비 등의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섭취할 경우 장관내의 내용물을 탈수·고형화시켜 변비를 악화시키거나 심할 경우 장폐쇄·장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원료목(木)의 종류/산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연소(탄화)상태에 따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포함한 각종 유기 부산물이 생성될 수 있어 위생적인 측면의 부작용도 우려됨.

3. 과거 단속사례

- 2005. 7. 1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인 활성탄(숯가루)을 식용의 목적으로 불법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 적발하여 행정 처분한 바 있음.

8) 전문가(식품독성학, 내분비내과 등) 자문에 의함.

Ⅲ. 조사결과

1. 위해사례

- ☐ 우리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먹는 숯 관련하여 2006년 이후 접수된 건은 3건임.

주요 위해 사례

- ㄸ 2007년 7월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라디오 프로그램 경품으로 받은 먹는 숯 제품을 섭취 후 설사와 복통 발생됨.
- ㄸ 2006년 2월 김모씨는 약국에서 과립형 숯제품을 구입하여 섭취 후 온 가족이 배탈과 복통 증상을 보임.

- ☐ 이러한 위해사례 이외에도, 먹는 숯 제품을 구입하여 혼입된 이물을 발견하여 접수한 사례가 있음.

<먹는 숯의 내용물 형태>



분말형태



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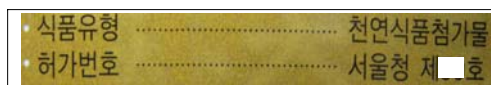


과립 형태

2. 표시실태 : 별첨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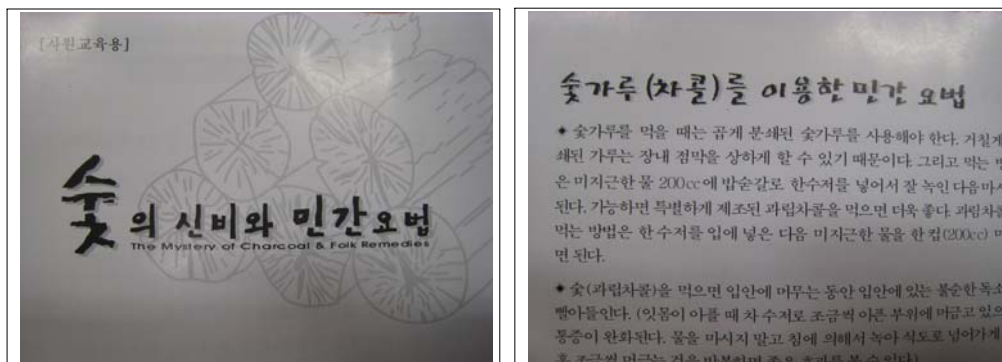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숯」 10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검토한 바, 판매시 광고 또는 유인물에 “식용” 또는 “먹는 숯”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질병의 치료 효과를 강조하고 있음.

- 먹는 숯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표시실태를 검토한 바, 10종 모두 재료, 식품유형, 허가번호,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식품의 유형⁹⁾을 천연식품첨가물로 표시하는 등 잘못된 표시를 사용하고 있음.
- 10종의 제품 모두 식품위생법 22조1항에 의해 식품첨가물 제제로 허가받은 번호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신뢰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음.



사용된 표시예 1

- 또한, 사용방법 표시에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별도 유인물 등으로 식용으로 하루에 수차례 섭취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별첨2 참조).



9) 식품의 유형은 식품공전의 분류에 따라 기재해야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분류가 아님.

3. 유통형태

- 먹는 숯의 주요판매경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이외에도 각종 숯가마 등에서도 판매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음.
- 현재 숯을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성적으로 복용방법을 안내하고 판매하거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에 책임이 제한적인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주로 유통시키고 있음.
- 판매시 제품 분류 카테고리는 오픈마켓별로 다음과 같으며, 옥션의 경우 건강식품으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는 숯제품을 건강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 G마켓 : 건강/애완/악기/성인>건강관리>숯용품
- 옥션 : 홈>식품/농수축산물/건강>건강식품>건강식품기타
- GSstore : 생활/가정/주방>원예/화분/관상어>실내분수/숯
- 디앤샵 : 생활/가정/주방>생활잡화>방향/방충

4. 광고실태

□ 지마켓

○ 광고문구 : 숯/먹는숯/식용숯

- “건강 웰빙생활의 시작!! 아침에 먹는 숯가루 한 숟가락,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 옥션

○ 광고문구 : 먹는 숯, 식용숯

- “미FDA시설물등록식약청허가품질보증 획득업체”

- “식품첨가물 기준 2000-32호 기준을 통과한 국내 최초의 식용 숯가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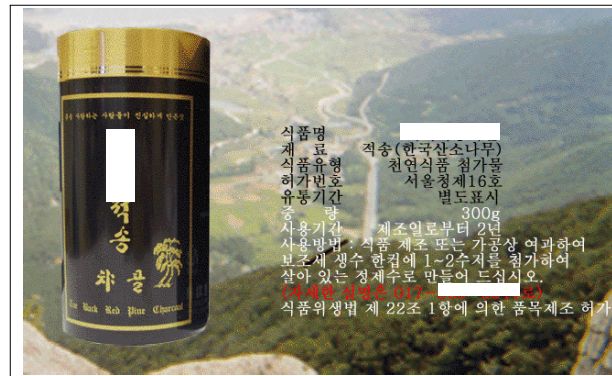


□ GSestore

○ 광고문구 : 먹는 숯가루 한농 차콜

- “차콜로 건강을 지키세요”

- 사용방법 : 식품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하여 보조제 생수 한컵
에 1~2 수저를 첨가하여 살아 있는 정제수로 만들
어 드십시오



☐ 디앤샵

- 광고문구 : 먹는숯, 식용숯
 - 사용방법 : “차콜을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마셔주세요”
 - 숯 복용 후 피로회복 등 효과가 있다는 구입 후기를 개시하고 있음.



IV. 문제점 및 대책

1. 제품 회수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 현재 숯제품의 일부가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구입하여 질병의 증상개선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존재함. 이러한 숯 제품은 식품으로써의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식용으로 섭취시 건강상의 문제발생이 우려됨.
- 특히 난치병 등의 치료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증상 개선을 기다리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음.
- 이러한 제품이 불법으로 유통된다는 것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전한 식품 유통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기 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 및 상시적인 시장 감시와 적발시 강경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2.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지양

- 소비자들은 질병이나 이상증상 발생시에 많은 경우 자가로 원인을 진단하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에 의존하여 증상 개선을 기대함. 이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에 대해 소비자는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기대함.
- 이는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의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며, 질병 발생시에는 반드시 병원·약국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소비자들은 특정 질병에 효과를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용도에 적합한 인허가 사항을 게시하는지 등을 점검하여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3.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 최근 인터넷쇼핑몰 중 오픈마켓 형태가 성행하면서 다양한 식품이 유통되고 있음. 현 법규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해 책임이 제한적이므로 제품 안전 문제 발생시 영세한 판매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됨.
- 먹는 숯의 경우에도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개인판매자 또는 간이과세사업자 등에 의해 일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가 접촉하기 쉬운 유통형태를 갖추고 있음.
- 개인간의 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제품 중 특히 안전성이 요구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V. 조치계획

1. 사업자 시정권고

- ☐ 현재 유통되고 있는 먹는 숯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자진시정 조치) 권고

2. 관계기관 건의

- ☐ 먹는 숯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3. 소비자홍보

- ☐ 언론홍보 및 소비자시대 개제

【별첨 1】 조사대상 제품 표시실태

제품명	구입처	표시사항
한농차콜	지마켓 보배바이오	“자연과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료: 적송(국내산소나무) 식품유형:천연식품첨가물 허가번호 : 대구청 제43호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에 의한 품목제조허가 유통기한 : 2009. 10. 01까지
한솔르바엘 차콜	지마켓 대박25	원재료명:재래종 소나무(한국산홍송) 식품의 유형 : 천연식품첨가물(활성탄) 허가번호:대전청 제133호 사용방법 :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취, 탈색, 정제)등으로 적당량 사용한다 품질유지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 제조연월일 : 별도표기
한농차콜	옥션 장수청정마을	“자연과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료: 적송(국내산소나무) 식품유형:천연식품첨가물 허가번호 : 대구청 제43호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에 의한 품목제조허가 유통기한 : 까지(미표시)
적송차콜 플러스	옥션 (주)바이칩스	재료:적송숯가루(한국산소나무) 식품유형:천연식품첨가물 허가번호:서울청 제50호 유통기한 : 별도표시 美FDA시설물등록번호 NO14619212206 “본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본제품은 천연식품첨가 물로서 식품제조 또는 여과 보조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여과 보조제로 사용시 최종 식품에 200:1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합니다”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백초장이나 송인목을 비롯하여 각종 숯을 약으로 사용해왔다...소나무는 천년을 사는 신비한 영물이며 생명력을 증진시키고 기를 불어 넣는 다하여..(이하 생략)”
태백 적송차콜	gsestore 참숯과꽃들	재료:적송(한국산소나무) 식품유형:천연식품첨가물 허가번호:서울청 제16호 유통기한:별도표시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2년 사용방법:식품제조또는가공상여과보조제 생수 한컵에 차콜1~2수저를 첨가하여 살아 있는 정제수로 만들어 드십시오. 식품위생법 제22조1항에 의한 품목제조허가

제품명	구입처	표시사항
태백 적송차콜	gsestore 행복한쇼핑허니몰	재료:적송(한국산소나무) 식품유형:천연식품첨가물 허가번호:서울청 제16호 유통기한:별도표시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2년 사용방법:식품제조또는가공상여과보조제 생수 한컵에 차콜 1~2수저를 첨가하여 살아 있는 정제수로 만들어 드십시오. 식품위생법 제22조1항에 의한 품목제조허가
한농차콜	디앤샵 chamnamu24	재료:적송(한국산소나무) 식품유형:천연식품첨가물 허가번호:대구청 제43호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에 의한 품목제조허가 제조연월일 : 2007. 10. 01 주의: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소나무는 천년을 사는 신비한 영물이며 생명력을 증진시키고 기를 불어넣는다하여 옛선조들은...”
한농차콜 (티백)	디앤샵 장수청정마을	“자연과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연식품 첨가물 5g*30포 재료: 적송(국내산소나무) 식품유형:천연식품첨가물 허가번호 : 대구청 제43호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에 의한 품목제조허가 유통기한 : 2009. 10. 01까지
적송 차콜플러스	죽염시대 (자연건강연구회)	재료:적송숯가루(한국산소나무) 식품유형:천연식품첨가물 허가번호:서울청 제50호 유통기한 : 별도표시 美FDA시설물등록번호 NO14619212206 “본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본제품은 천연식품첨가물로서 식품제조 또는 여과 보조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여과 보조제로 사용시 최종 식품에 200:1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백초장이나 송인묵을 비롯하여 각종 숯을 약으로 사용해왔다...소나무는 천년을 사는 신비한 영물이며 생명력을 증진시키고 기를 불어 넣는다하여..(이하 생략)”
적송차콜	참숯가게	재료:적송숯가루(한국산소나무) 식품유형:천연식품첨가물 허가번호:서울청 제50호 유통기한 : 별도표시 美FDA시설물등록번호 NO14619212206 “본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본제품은 천연식품첨가물로서 식품제조 또는 여과 보조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여과 보조제로 사용시 최종 식품에 200:1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백초장이나 송인묵을 비롯하여 각종 숯을 약으로 사용해왔다...소나무는 천년을 사는 신비한 영물이며 생명력을 증진시키고 기를 불어 넣는다하여..(이하 생략)”

【별첨 2】 제품에 포함된 광고의 내용

한농차콜(지마켓, 판매자:보배바이오)

차콜 복용방법 : 1회 한숟가락(약 5g정도)을 물 한 컵과 함께 드십시오

숯가루는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숯가루가 체내 노폐물과 독소 등을 흡착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다이어트 목적으로 숯가루를 드신다면 식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식후 30분이 경과한 후 드시기 바랍니다.) 변비가 있으시다면 숯가루 드실 때 물을 많이 마시고, 설사가 있으시다면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중략)

무엇보다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는 숯가루 한 숟가락,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태백적송차콜(gsestore, 판매자:참숯과꽃들)

판매자가 자필로 “차콜 복용법 모르시면 전화주세요!”라고 메모함.

상품종류 : 한농차콜(먹는숯가루)/영림수(먹는목초액)

한농차콜(옥션, 판매자:장수청정마을)

한농차콜(디앤샵, 판매자:chamnamu24)

한농차콜(티백)(디앤샵, 판매자:장수청정마을)

먹는 숯 제품 소개 및 “숯이 사람을 살리네”(만화로 보여주는 숯의 신비)

숯 굽는 한농마을에서 숯가루요법에 대한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적송차콜플러스(죽염시대)

“숯의 신비와 민간요법”-신이 내린 선물 “숯”

역사 속의 숯 이야기/ 숯의 성분과 작용/ 숯의 종류 및 용도/ 서양에서의 숯가루 사용/ 바쁜 현대인의 간을 도와주는 숯/ 숯가루를 이용한 민간 요법/ 일요신문기사/ 내가 아는 숯가루(체험수기)

적송차콜(참숯가게)

드실 때에는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공복에 20-30알 정도를 잘 드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한 번 드실 때마다 물을 3~4컵 정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별첨 3】 자진시정조치의 절차

소비자기본법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 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소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